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6. 24 선고 2021가단1290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C

소송대리인 D

변론 종결2022. 5. 13.

판결 선고2022. 6. 24.

주 문

1.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18. 4.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2,854,98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854,9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는 소외 F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회원 가입을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위 두 회사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 대금채권은 아래와 같이 순차 양도되었다.

- 1) 2003. 4. 30. H 유한회사에 양도됨
- 2) 2008. 3. 31. I 주식회사에 양도됨
- 3) 2011. 12. 28. 주식회사 J에 양도됨
- 4) 2012. 9. 26. 원고에게 양도됨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받아 소외인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9,480,611원 및 그 중 2,393,288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4. 12. 2.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 43409 양수금 사건).

라.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인의 아버지 K의 소유였다. K이 2018. 4. 3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15)와 소외인을 포함한 6인의 자녀(상속지분 각 2/15)가 있다.

마. K이 사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018. 5. 24.	2018. 4.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18. 5. 29. 매매 2018. 9. 10. 매매	피고	125,000,000원 125,000,000원
2018. 6. 12.	L		
2018. 9. 18.	M		

바.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타채 62867 사건)을

신청하였다. 위 사건에서 소외인은 2020. 4. 17.자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달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사.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액수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1. 11. 9. 기준 원리금 합계 12,854,98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초과 상태인 소외인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인은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소외인의 상속분인 2/15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30.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2018. 5. 24.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하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신용카드 대금채권으로서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하지 아니한 이행권고결정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제3자에게 등기가 이전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지분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소외인의 상속분인 2/15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2)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25,000,000원이고, 이 중 소외인의 상속분은 16,666,666원($=125,000,000\text{원} \times 2/15$, 원 미만 버림)이며, 원고의 채권액은 2021. 11. 9. 기준 원리금 합계 12,854,981원이므로, 12,854,981원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2,854,981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2,854,9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김정아

별지